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194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8. 2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개정내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단서중 “대전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를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하고, 같은 조제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단서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0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2007년 8월 27일
3. 상정일자 :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9. 10)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개정내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희배)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7. 5. 11. 「지방자치법」과 2007. 8. 17.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토론요지 : 생략

V. 질의답변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